

1. 개정이유

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(안 제2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16. ~ 4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)”을 “(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·대상 및 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

가.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세대 :
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,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

나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(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)가 전부 또는 일부 세대에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세대: 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,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주택 세대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공사 중인 공동주택 세대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
1.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: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
2.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공사 중인 공동주택 세대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: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<u>시기 및 절차</u> 등) ① 안전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 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 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.	제20조(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<u>대상 · 시기 및 절차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공동주택(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 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)의 세대: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 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, 그 안 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</u>	1.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공동주택의 세대</u>
<u><신 설></u>	<u>가.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 동주택의 세대: 사용전검사 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 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, 그 안전점검을</u>

2. (생략) ② (생략)	<u>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</u> 나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(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)가 전부 또는 일부 세대에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세대: <u>사용전검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,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